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2. 19 선고 2024가단524452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

담당변호사 김준동, 김말금

피고A

변론 종결2024. 12. 5.

판결 선고2024. 12. 19.

주 문

1.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5. 9.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"52,070,498원 및 이중 10,528,834원에 대하여는 2024. 5. 24.부터, 41,362,605원에 대하여는 2024. 5. 29.부터 각 2024. 9. 5.까지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"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2.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2. 따라서 주문 제1항의 기재의 근거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주문 제2항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.

판사이회기

별지